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5월 29, 이정헌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5년 5월 3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

8. 26.)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

11. 18.)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

11. 21.)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번안의 건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7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

11. 24.) 상정·대체토론·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이정현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인력의 수요 실태 파악 및 중·장기 수급 전망 수립과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등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공지능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산업구조가 급격히 재편되고 있는 만큼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고급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과 장기적인 경력 지원이 필수적임. 또한 인공지능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인공지능기술 전문인력의 근로환경 개선 및 처우개선 등 복지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직무역량 강화 및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활용, 전문인력의 근로환경 개선과 처우 증진 등 복지 향상 등을 포함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 현재 인공지능기본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문인력

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인공지능산업 관련 인력의 국제교류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인공지능협회가 수행하는 전문인력 양성 교육, 전문인력 해외진출 지원 등에 대하여 지원·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기존 인공지능기본법에 의해서도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시책 수립과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 현)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